협동조합 운영가이드 교육

협동조합 지원센터 042-382-9924
http://www.djse.org/app/main/index

협동조합 조합원 관리 - 가입과 탈퇴

<표준정관>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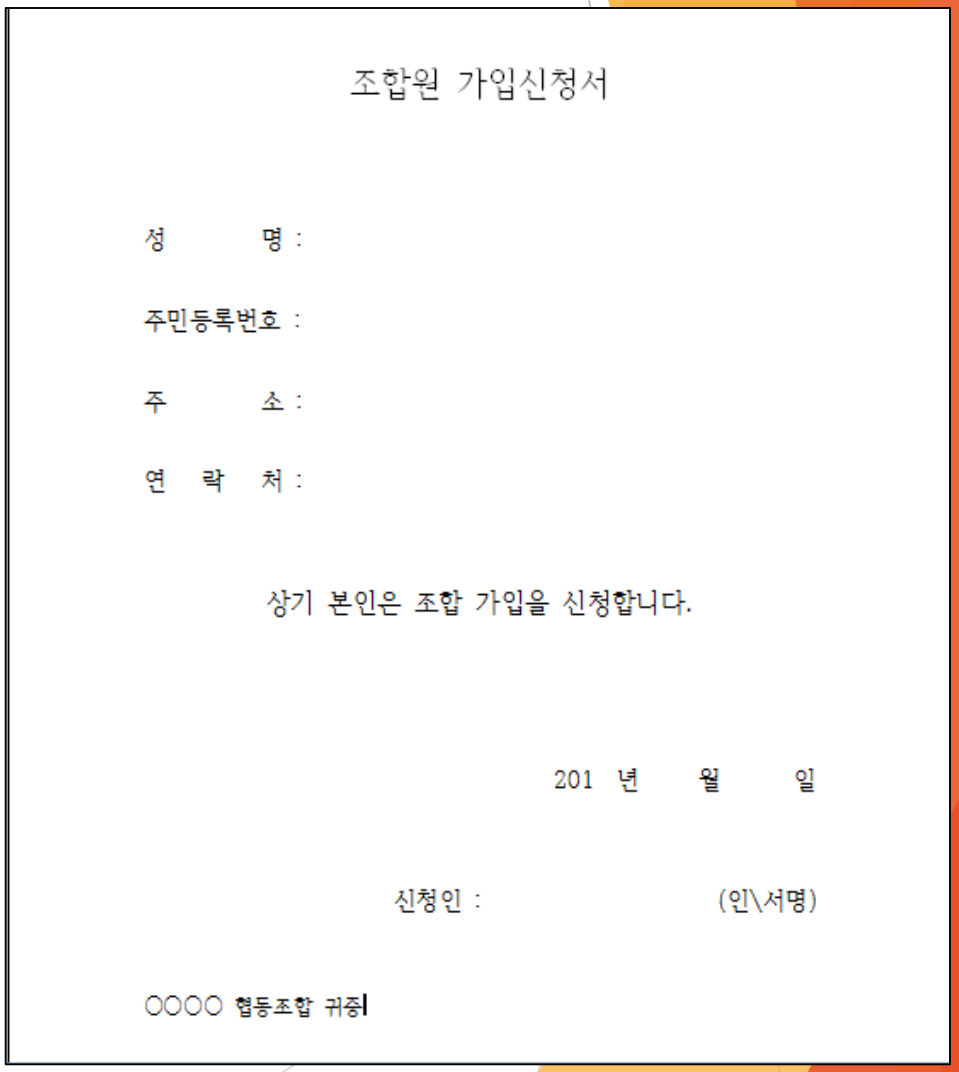

조합원 가입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조합 가입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서명)

○○○○ 협동조합 귀중

협동조합 조합원 관리 - 가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표준정관 >

제19조(출자증서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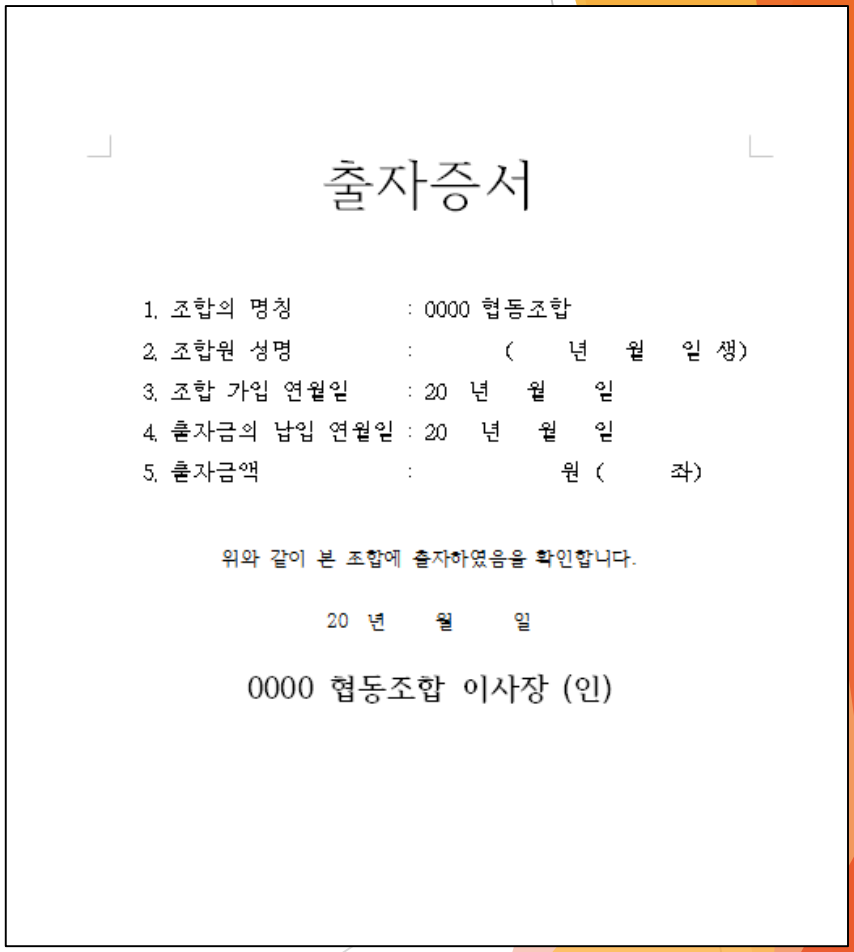

출자증서

1. 조합의 명칭 : 0000 협동조합
2. 조합원 성명 : (년 월 일 생)
3. 조합 가입 연월일 : 20 년 월 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 20 년 월 일
5. 출자금액 : 원 (좌)

위와 같이 본 조합에 출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동조합 이사장 (인)

협동조합 조합원 관리 - 탈퇴

<표준정관>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조합 탈퇴를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조합원 : (인\서명)

협동조합 조합원 관리 - 가입과 탈퇴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조합원명부

연번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가입일	탈퇴일	출자금(원)	이해관계	비고
1	이××						직원	이사장
2	김○○						생산자	이사
3	박△△						자원봉사자	이사
4	권□□						후원자	이사
5	김▲▲						소비자	감사
6	장▼▼							
7	…							
8	…							
9	…							

협동조합 의사결정기구 - 조직구조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의 조직구조

필치기관	목적기관
법적으로 필히 구성해야 함	필치기관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기능
총 회 이사회 감 사	위원회 사무국

협동조합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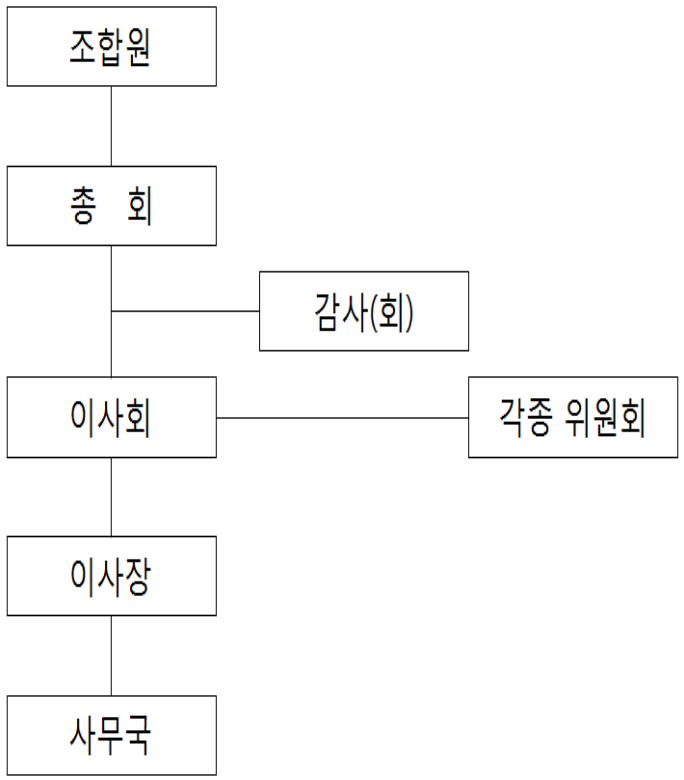

(참고)정기총회 관련 주요 법규사항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관련

협동조합기본법 제28조(총회)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표준정관 제3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② …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표준정관 제5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정기총회 관련 주요 법규사항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의결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표준정관 -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안)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기총회 관련 주요 법규사항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이사회 의결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동조합 의사결정기구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제37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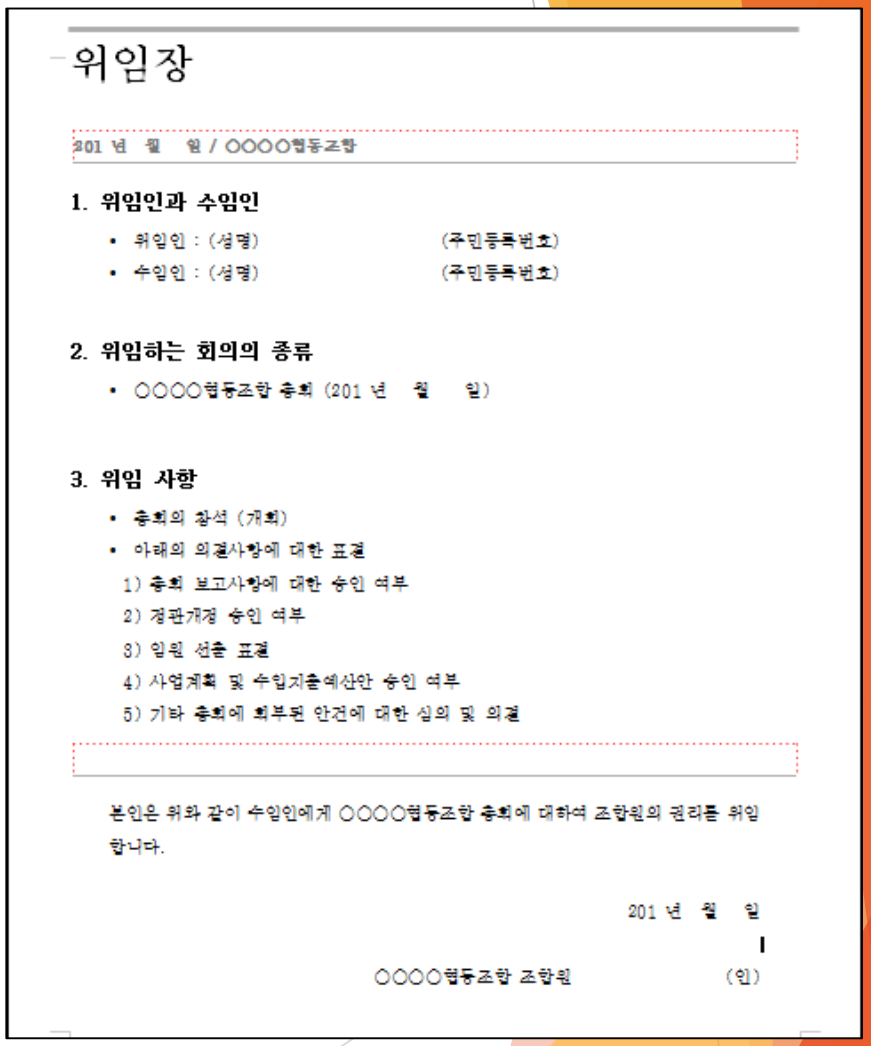

위임장

201 년 월 일 / ○○○○협동조합

1. 위임인과 수임인

- 위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수임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2. 위임하는 회의의 종류

- ○○○○협동조합 총회 (201 년 월 일)

3. 위임 사항

- 총회의 참석 (개회)
- 아래의 의결사항에 대한 표결
  1) 총회 보고사항에 대한 승인 여부
  2) 정관개정 승인 여부
  3) 임원 선출 표결
  4)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 여부
  5) 기타 총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본인은 위와 같이 수임인에게 ○○○○협동조합 총회에 대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위임합니다.

201 년 월 일

○○○○협동조합 조합원 (인)

협동조합 의사결정기구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임 원 취 임 승 락 서

본인은 00협동조합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201 년 월 일

성 명 : ㊞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2부를 작성하여 한부는 등기 시 사용하고 한부는 조합에 보관합니다.
(이사, 감사 동일)

00 협동조합 귀중

사 임 서

본인은 0000 협동조합 이사장의 직을 사임합니다.

2014년 4월 일

성 명 : ㊞	
주민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0000 협동조합 귀중

협동조합 변경신고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변경신고 관련 법령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변경신고 절차 >

총회의결	⇒	변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	변경등기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대전광역시청 7층 사회적경제계 270-3563 (서명석주무관)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법 제61조제2항 각 호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 (법 제16조제3항)**

협동조합 변경신고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변경신고서**

※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 인	조합명(연합회명)			전화번호	
	소재지				
	이사장(회장)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설립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사본 1부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신고확인증 1부(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변경신고 사항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신고확인증 켓번기재	→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처리기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신고서류	법정 서식	예시 참조
1	변경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O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임의 서식	O
3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서류 참조	△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이후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신고서와 함께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사항	첨부 서류	예시 참조	변경등기	사업자정정
1	명칭	1. 신고확인증 2. 총회 의사록 사본 3. 변경된 정관	X	O	O
2	주사무소 소재지	1. 신고확인증 2. 총회 의사록 사본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3. 변경된 정관 (정관을 변경한 경우)	X	O	O
3	이사장	1. 신고확인증 2. 변경된 임원명부 3. 총회 의사록 사본	X	O	O
4	임원	1. 변경된 임원명부 2. 총회 의사록 사본	X	X	X
5	사업계획	1. 사업계획서 2. 수입·지출 예산서 3. 총회 의사록 사본 4. 변경된 정관	X	O	O
6	출자 1좌당 금액의 감소	1. 변경된 대차대조표 2. 총회 의사록 사본 3. 변경된 정관 4.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X	X
7	위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정관 변경	1. 변경된 정관 2. 총회 의사록 사본	X	X	X

협동조합 변경신고 - 의사록 공증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의사록 공증에 필요한 서류 >

- 의사록 원본 2부, 총회참석 조합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술서, 위임장

진 술 서

법 인 명	00협동조합
소 재 지	법인의 도로명주소
회의의 종류	창립총회
소 집 일 시	창립총회 개최일시
소 집 장 소	창립총회장소의 도로명주소 와 개최장소 명칭

본인은 발기인 / 조합원 에서 위 법인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되었으며, 회의의 결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진술합니다.

201 . . .

위 진 술 인 00협동조합
대표자 이사장 000 (인) ※이사장인감도장과 법인인감날인

주 소 법인도로명주소

[서10-5호 서식]

위 임 장

수입인지 50원

수임인	성 명: 주 소: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발기인 / 조합원 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허락합니다.

다 음

1. 사서증서 제목: 협동조합 임시총회 의사록.

2015년 월 일

위 임 인	성 명: 인 감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인 감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인 감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인 감 주 소:
위 임 인	성 명: 인 감 주 소:

<첨부 인감증명서>

협동조합 변경신고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조합원명부

연번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가입일	탈퇴일	출자금(원)	이해관계	비고
1	이××						직원	이사장
2	김○○						생산자	이사
3	박△△						자원봉사자	이사
4	권□□						후원자	이사
5	김▲▲						소비자	감사
6	장▼▼							
7	…							
8	…							
9	…							

협동조합 변경신고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시 원시정관과 개정정관 모두 보관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1차개정 : 2016.5.3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 위하여 ----------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협동조합 변경등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제출용]

등기번호	000866
등록번호	

명 칭	협동조합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주사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0번길 9, 2층(대사동)

목 적

조합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연구조사, 교육 등의 중간지원을 수행함으로서 협동과 연대, 나눔의 가치로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조사, 교육, 컨설팅 사업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1.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1.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 기타 조합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장 유승민 690608-*******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358, 403동 1701호(하기동, 송림마을아파트4단지)

이사 [illegible]
이사 [illegible]
이사 [illegible]
이사 [illegible]
이사 [illegible]
감사 [illegible]

기 타 사 항

1. 출자에관한사항
   출자 총좌수 700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금 7,000,000원
1. 설립신고연월일
   2014년 12월 2일

법인성립연월일 2014 년 12 월 04 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14 년 12 월 04 일 등기

수수료 1,000원 영수함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 사무소 이전 이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이사장의 주소 변경은 전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 ☐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그 금액과 납부번호을 기재한다.

(사회적)협동조합 변경등기신청

접수	년 월 일 / 제 호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각종통지

명 칭	호부호형 협동조합	등기번호	948646541894
주 사 무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등기의목적	임원변경		
등기의사유	2015년 2월 6일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함에 따라 등기를 구함		

등 기 할 사 항

이사장 홍길동, 이사 은세상 2015년 2월5일 임기만료

이사장 백두산(987654-1234567,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이사 임적경 2015년 2월 6일 중임
이사 고길동(876543-2345678) 이상 2015년 2월 6일 취임

신청등기소 및 등록면허세/수수료

순번	신청등기소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세액합계	등기신청수수료
1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분경	금 40,200원	금 4,020 원	금 44,220 원	금 6,000 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	00000000
과 세 표 준 액	

첨 부 서 면

1.정 관	통	1.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 통
1.총회의사록	1 통	1.인감신고서	1 통
1.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서	0 통	1.인감대지	3 통
1.주민등록표등(초)본	0 통	1.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통

2015년 2월 10일

신청인 명 칭 호부호형 협동조합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협동조합 변경등기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이후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모두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명칭, 임원, 이사장의 주소, 목적, 출자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 단, 목적의 변경은 단순히 목적문만 아니라 정관에 표시된 사업을 함께 기재하므로 실제 사업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주사무소의 변경은 주사무소이전 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만일 구관할 등기소와 신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타관이전)에 타관이전등기와 함께 동시에 다른 변경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사무소 이전 등기신청보다 먼저 접수하여야 한다.
- 등기시 첨부하는 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은 공증받아야 한다.

변경사항	등록면허세	등기신청 수수료
자본 증가 또는 출자 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6천원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건당 6천원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건당 4만2백원	건당 6천원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건당 6천원

변경사항		필요서류 (첨부서류)	예시 참조
주사무소 이전		주사무소 이전 등기 신청서* 주사무소 이전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또는 이사회 의사록)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O
주사무소 이전 이외의 변경			
공통서류		변경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사장 포함 임원변경	사임	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퇴임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시 추가 서류 없음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결격사유) 금치산 등 판결 또는 결정등본	
	해임	해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취임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취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취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취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중임	중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중임한 임원의 취임승낙서 중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중임한 임원의 주민등록등(초)본	
	이사장	이사장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선임을 증명하는 총회의사록 이사장 취임승낙서 이사장 인감증명서 이사장 주민등록등(초)본	
이사장 주소 변경		이사장의 주민등록등(초)본	
명칭 또는 목적(사업종류) 변경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변경된 정관	
출자좌수 · 출자금총액 변경		출자금 납입증명서 (및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등) 출자감소에 따른 변경시에는 출자감소 의결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운영 Q & A